

제안번호	제 82호
의결년월일	1996. (제 회)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6 . 10 .

서산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
----------	----

제출년월일 : 1996. 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 안 이 유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세조례를 정비하여 차질없는 세징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가. 종전에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시사무의내부위임규정에서 위임처리 하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시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나.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지역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세무공무원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므로써 세금수납의 업무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의2)
- 다.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징수하던 주민세율은 종전과 같이 시행토록 하나, 앞으로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0,000원의 세액을 적용하도록 정함 (안 제15조제1항)
- 라. 종전에는 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다음 7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차종(승용자동차·기타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이하소형자동차)별로 입찰적으로 과세의 표준과 세율에 따라 연세액으로 부과·징수토록 신설함 (안 제26조).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시사무의내부위임규정으로” 를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로” 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수납) 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7조의2 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 라 함은 납 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구 분	세 액
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	1,800원
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	1,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20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 을 “시가표준액” 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세액	배 기 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10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2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6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2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500씨씨 이하	250원
		3,000씨씨 이하	310원
		3,000씨씨 초과	370원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2조제1항중 “법 제238조의2 규정”을 “법 제238조의2·법 제279조 및 법 제290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부과·징수사무의위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u>시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u></p> <p> </p> <p><신 설></p>	<p>제6조(부과·징수사무의위임) ----- ----- ----- ----- ----- ----- 서산시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로 -----</p> <p>제6조의2(세무공무원의수납) 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u>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정하는 지역</u> <u>이라 함은 [별표1] 에서 정하는 지역을</u> <u>말한다.</u></p> <p>②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u>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 라 함</u> <u>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u> <u>외한다)이 500,000원이하인 시세를 말</u> <u>한다.</u></p>

현	행	계	정	안																								
제15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세율) ① ----- -----																										
1. 개인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th> <th style="text-align: center;">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th> <th style="text-align: center;">액</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800원</td> </tr> <tr> <td colspan="2">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세	액	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		1,800원		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		1,000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th> <th style="text-align: center;">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th> <th style="text-align: center;">액</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800원</td> </tr> <tr> <td colspan="2">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세	액	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		1,800원		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		1,000원	
구	분	세	액																									
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		1,800원																										
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		1,000원																										
구	분	세	액																									
동지역(통합이전의 시지역)		1,800원																										
읍.면지역(통합이전의 군지역)		1,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둔개인:50,000원																										
2. 법인 (생략)		2. 법인 (현행과 같음)																										
제20조(과세표준) ①(생략)		제20조(과세표준)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제80조의 규정에 의한 <u>과세시가표준액</u> 으로 한다.		② ----- ----- <u>시가표준액</u> ----- -----																										

현행	개정안																																								
<p>제26조(신고의무)법 제196조의9의 규정 에 의한 신고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 그 해당자 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 등록 또 는 이전등록등을 필한 후 7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정하 는 사항을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 다.</p> <p>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 소의 명칭</p> <p>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제정량 또는 승차정원</p> <p>3. 정차장</p> <p>4. 자동차의 등록번 호 및 배기량</p>	<p>제2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p> <p>1. 승용자동차</p> <p>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67 610 1249 1097"> <thead> <tr> <th colspan="2">영업용</th> <th colspan="2">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씨씨 이하</td> <td>18원</td> <td>800씨씨 이하</td> <td>100원</td> </tr> <tr> <td>1,500씨씨 이하</td> <td>18원</td> <td>1,000씨씨 이하</td> <td>120원</td> </tr> <tr> <td>2,000씨씨 이하</td> <td>19원</td> <td>1,500씨씨 이하</td> <td>160원</td> </tr> <tr> <td>2,500씨씨 이하</td> <td>19원</td> <td>2,000씨씨 이하</td> <td>220원</td> </tr> <tr> <td>2,500씨씨 초과</td> <td>24원</td> <td>2,500씨씨 이하</td> <td>250원</td> </tr> <tr> <td></td> <td></td> <td>3,000씨씨 이하</td> <td>310원</td> </tr> <tr> <td></td> <td></td> <td>3,000씨씨 초과</td> <td>370원</td> </tr> </tbody> </table> <p>2. 기타 승용자동차</p> <p>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67 1306 1249 1418"> <thead> <tr>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20,000원</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p>3. 승합자동차</p> <p>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10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2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6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2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500씨씨 이하	250원			3,000씨씨 이하	310원			3,000씨씨 초과	370원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10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2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6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2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500씨씨 이하	250원																																						
		3,000씨씨 이하	310원																																						
		3,000씨씨 초과	370원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현	행	개 정 안						
5. 취득가격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6. 신고사항 발생 년월일과 그사유		고	속	비	스	100,000원	-	
7. 기타 참고사항		대	형	전	세	버스	70,000원	-
		소	형	전	세	버스	50,000원	-
		대	형	일	반	버스	42,000원	115,000원
		소	형	일	반	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p>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 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현 행	개 정 안													
	<p>5. 특수자동차</p> <p><u>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u></p> <table border="1" data-bbox="360 469 1225 633"> <thead> <tr> <th>구 분</th> <th>영 업 용</th> <th>비 영 업 용</th> </tr> </thead> <tbody> <tr> <td>대형특수자동차</td> <td>36,000원</td> <td>157,500원</td> </tr> <tr> <td>소형특수자동차</td> <td>13,500원</td> <td>58,500원</td> </tr> </tbody> </table> <p>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p> <p><u>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u></p> <table border="1" data-bbox="358 846 1222 954"> <thead> <tr> <th>영 업 용</th> <th>비 영 업 용</th> </tr> </thead> <tbody> <tr> <td>3,300원</td> <td>18,000원</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현행	개정안
<p>제52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물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52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법 제279조 및 법 제290조의 규정 ----- ----- ----- ----- ----- ----- -----</p> <p>②(현행과 같음)</p>

[별표 1]

세무공무원의 수납지역

읍·면·동	지 역	비 고
대 산 읍	웅 도 리	도서지역 (웅 도)
팔 봉 면	고파도리	도서지역 (고파도)
지 곡 면	도성 2리	도서지역 (우도, 분점도)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996. 6. 17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6. 10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6. 11
- 라. 상정일자 : 1996. 6. 17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과장 유제동)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세조례를 정비하여 차질없는 세정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종전에는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을 시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서 위임처리 하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시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지역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세무공무원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므로써 세금수납의 업무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 2).
-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 징수하던 주민세율은 종전과같이 시행토록하나, 앞으로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0,000원의 세액을 적용하도록 정함.
(안 제15조 제1항)

- 종전에는 법 제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다음 7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차종(승용자동차, 기타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별로 일률적으로 과세의 표준과 세율에 따라 연세액으로 부과, 징수토록 신설함(안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개정 조례안은 세무분야의 사무중 서산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 하던것을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에의거 처리하도록 강화하고,
- '95. 12. 6 법률제4995호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역 및 금액을 정하고
 - 주민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 자동차세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